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67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김 윤 · 문진석 · 서미화
김영진 · 진성준 · 박용갑
최혁진 · 윤준병 · 남인순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 · 사회 · 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해서 자살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는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경찰 · 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살 원인과 자살예방정책 국내 · 외 사례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 원인 등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 · 분석하여 자살예방 연구에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음.

이 밖에 자살시도자 구조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및 사망·상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 학교,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정보 범위에 자살사건 발생 시각·장소, 자살시도 방식 등을 포함함(안 제12조의2제4항).

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

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자살 원인 및 자살 예방사례 등 자살예방 관련 분석·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제5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 관련 통계·연구 등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하여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의5 신설).

사.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업무를 하는 하는 기관에 대해 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을 지원

할 수 있음(안 제23조제3항 신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란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주소 및 연락처”를 “주소, 연락처, 국적, 자살사건 발생 시각·장소, 자살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하며, 정보의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4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 내 부설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내·외 자살의 동향 및 원인에 대한 분석·연구
2. 국내·외 자살예방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연구

3.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연구
4. 경제적·사회적 지표를 활용한 지역별 자살위험성 평가
5.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연구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자살통계의 작성, 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보유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을 준용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

의 결합 및 외부 반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 ① 빈곤·채무·실업, 장애·질병·노령, 폭력·재난 피해, 가정문제 등 다양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기관·단체(이하 “취약계층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자살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자살위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자살위험성 판정도구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판정도구의 개발·보급 및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에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2(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신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애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상담·지원
2.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폭력 피해 구제 및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담 등 지원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5항”을 “제12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의2(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란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u><신설></u>	제3조의2(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생략) <u><신설></u>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하여 제

② (생 략)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u>주소 및 연락처</u>로 한다. <u><신 설></u>	<u>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주소, 연락처, 국적, 자살사건 발생 시각·장소, 자살 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
--	---

⑤ · ⑥ (생략)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 ④ (생략)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하며, 정보의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u>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 제7항----- ----- ----- ----- ----- ----- ----- ----- ----- ----- ⑨ ----- -----제4항 및 제5항-----제7항-- -----제8항----- ----- ----- -----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⑤ ~ ⑧ (생 략)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 내 부설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내·외 자살의 동향 및 원인에 대한 분석·연구
2. 국내·외 자살예방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연구
3.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연구
4. 경제적·사회적 지표를 활용한 지역별 자살위험성 평가
5.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연구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자살통계의 작성, 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

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
법정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결합
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되는 사회보장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보유하는 건강보
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사후관
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에 대
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을 준용하며, 보건복
지부장관은 정보의 결합 및 외
부 반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

<신 설>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 ① 빈곤·채무·실업, 장애·질병·노령, 폭력·재난 피해, 가정문제 등 다양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기관·단체(이하 “취약계층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자살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자살위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자살위험성 판정도구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판정도구의 개발·보급 및 정

<신 설>

보시시스템간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에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2(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신설>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신체
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
스 등에 따른 건강장해의 치
료 및 예방을 위한 상담·지
원

2.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폭력 피
해 구제 및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종사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지원 등의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사
업 종사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
담 등 지원 업무에 드는 비용

제26조(과태료) ① <u>제12조의2제5</u> <u>항</u> 을 위반하여 과기 등의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②·③ (생 략)	<u>을 지원할 수 있다.</u> 제26조(과태료) ① <u>제12조의2제6</u> <u>항</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